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능후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7431호, 2020. 6. 9. 제정, 2021. 1. 1. 시행)됨에 따라, 법 상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·연금·급여 등에 대한 소득산정 근거를 법령에 반영하는 등 현행 시행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상의 각종 수당·연금·급여 등을 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. (안 제5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4호다목 중 “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등”을 “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소득의 범위) ① 법 제6조 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실제소득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 1. ~ 3. (생 략) 4. 이전소득[차상위계층에 속하 는 사람(이하 “차상위자”라 한 다)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 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 목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] 가.·나. (생 략) 다. 「국민연금법」, 「기초 연금법」, 「공무원연금 법」, 「공무원 재해보상 법」, 「군인연금법」, 「별정우체국법」, 「사립 학교교직원 연금법」, 「고용보험법」, 「산업재 해보상보험법」, 「국민연 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	제5조(소득의 범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다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를」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·연금·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

②·③ (생략)

-----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057